

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(박미효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04. 29.

발 의 자 : 박미효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장옥준·허은·고광민
김성주·최원준·이현숙
박지남 의원(7명)

1. 제안이유

-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, 이에 반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열악한 실정임.
- 따라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요양요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궁극적으로 노인요양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3조 ~안 제4조)
- 나. 장기요양요원의 처우,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사업에 대해 규정함 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
다.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

나. 예산조치 : 예산 편성 필요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장기요양기관”이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.
2. “장기요양요원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
2.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,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처우개선 사업 등)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
2.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, 조사, 연구
3.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, 훈련
4.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)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「근로기준법」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·조치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·폭행·성희롱·성폭력으

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)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